

● 연구 논문

새 법제 하에서 동산담보관리의 효율화 방안*

박 흰 일**

I. 머리말	Ⅲ. 새 법률 하에서의 동산 담보관리 효율화 방안
Ⅱ. 새 법률의 골자 및 현행 동산 담 보관리상의 문제점	Ⅳ. 맺음말

I. 머리말

법원과 법무부가 추진해온 동산·채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기업의 동산, 매출채권,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담보등기를 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법원 행정처¹⁾와 법무부가 각별로 추진하였으나, 두 법안은 2009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산·채권담보법”)²⁾으로 통합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마침내 2010년 6월 10일 공포되었다. 기업이 보유하는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심지어 농가의 가축까지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이 법률³⁾은 법원의 전자등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2년의 시

* 본고는 晉山 金文煥 선생 정년기념논문집 제2권 「기업법·지식재산법의 새로운 지평」(법문사, 2011.11)에 “How to Efficiently Manage Movable Properties under the New Collateral Regime in Korea”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필자의 영어 논문을 일부 수정한 번역본이다.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무대학원 통상법무학과 주임교수, 법학박사.

1) 대법원 특수등기연구반,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 법원 행정처, 2007. 11.

2)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자료, 2009.7.17; 입법작업 경위 및 주요 내용을 해설한 논문으로는 김재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월간 법조, 법조협회, 2009.11, 5~51면 참조.

3)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할 수 있는 자산이 동산, 매출채권,

간적 여유를 두었다가 마침내 2012년 6월 11일자로 시행되었다.⁴⁾

기존 법제 하에서는 기업동산과 매출채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대항요건을 취하기도 번거로운 데다 이중양도·선의취득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채권자로서는 안심할 수 없었다. 또 지적재산권도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⁵⁾ 이에 따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담보권을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⁶⁾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담보법제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자금조달에 유리하더라도 채권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심할 수 없는 한 널리 활용되기 어렵다. 채권자로서 담보권 취득이 너무 불편하다거나⁷⁾ 제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면⁸⁾ 그 이용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실제 이용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첨단 정보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⁹⁾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¹⁰⁾

본고는 새 법률의 골자를 소개하고 현행 동산담보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담보권설정자에게 별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담보권자가 채권회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용할 때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적재산권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이 법률은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民生法案’으로 인식되었다.

- 4) 대법원의 동산등기예규 마련이 지연되면서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상품 출시도 다소 늦춰졌다.
- 5) 이하 관보 2010.6.10자에 게재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참조.
- 6) 동산·채권담보는 입법기술적으로 등기소에 데이터베이스가 구비되어 있는 법인과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다.
- 7) 담보로 제공할 동산이나 매출채권의 가짓수가 많고 그의 식별을 위한 기재사항이 적지 않다면 담보권취득이나 목적물 변경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타당성이 떨어진다.
- 8) 담보권자로서 담보목적물의 현황파악이 번거롭고 담보권실행의 절차나 방법이 복잡할 경우에는 담보권취득을 회피하려 들 것이다.
- 9) 박원일, “기업동산의 담보활용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비교사법 14권 2호, 2007.6, 235~241면.
- 10) 물론 첨단 정보기술의 이용이 플러스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언제 어디서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든 휴대폰, 스마트폰도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과 같이 사기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II. 새 법률의 골자 및 현행 동산 담보관리상의 문제점

1. 새 법률의 골자

2012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동산·채권담보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¹¹⁾

가.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법 제3조 및 제34조)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담보권설정자의 자격(법 제3조, 제4조, 제34조 및 제37조)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다. 근담보권(법 제5조 및 제37조)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라.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 의무(법 제6조 및 제3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명시하도록 함.

11) 각주 5)의 관보 참조.

마. 담보등기의 효력(법 제7조 및 제35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도록 함.

2)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바. 담보권의 효력(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7조)

1)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 청구 후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果實)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도록 함.

2)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の場合에도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占有侵奪)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보권의 실행(법 제21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 방법을 인정하되, 취득정산 및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

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며, 다만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보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다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여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권자를 보호함.

아. 담보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의 신청 및 등기신청의 접수

(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5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하고,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자. 담보등기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법 제49조)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등기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등록 및 그 효과(법 제58조 및 제59조)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2. 현행 동산 담보관리상의 문제점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할 때 준공 전 공장의 기계·기구나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담보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기계·기구의 경우 공장을 준공한 다음 공장건물이나 부지에 공장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여기에 목록을 추가할 때까지 양도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고작이었다.¹²⁾ 질권을 취득하면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창고증권이나 약속어음 등으로 체화시켜 여기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할인 매입하는 예가 많았다. “A양도장의 돼지 전부” 하는 식으로 목적 동산이 담보권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채권은행이 집합물양도담보를 취득하였다.¹³⁾ 그리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는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을 다른 기업자산과 풀(pool)로 하여 자산유동화(ABS 또는 ABL)의 방법으로 자금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합물양도담보의 경우 개개의 담보물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따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권리자와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담보물의 종류와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담보관리가 불가능하였다. 그 밖에 담보관리·처분에 따른 가외의 비용이 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다음 세 가지 사례를 알아보자.

〈케이스 1〉 공장에 설치된 기계

리스로 도입한 공장 기계의 리스기간이 끝났다는 말에 채권은행이 공장주에게 대출을 한 후 저당권에 목록 추가하는 식으로 기계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동 기계를 계속 점유 사용하던 공장주가 리스기간 종료 직후 다른 기계와 함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넘긴 경우에 채권은행이 다른 공장 자산과 함께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가?

또는 은행 대출을 받아 공장에 설치된 고가의 수치제어 선반기계에 대해 채권은행은 양도담보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이 준공되기 전에 핵심 부품인 수치제어 마이

1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제1항.

13) 대판 1988.10.25. 85누941; 1988.12.27. 87누1043; 1990.12.26. 88다카20224.

크로 프로세서가 망실된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공장주가 공장 기계설비와 창고의 재고자산을 풀로 하여 유동화(asset-backed securitization, asset-based loan)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이 이증으로 양도되는 것도 모를 수 있다.¹⁴⁾

채권은행은 또다른 소유자 또는 유동화 SPV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priority)를 주장할 수 있는가? 채권은행이 당해 물건에 어떤 형태로든 명인방법을 쓰지 않은 이상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 것이다.

〈케이스 2〉 태양열 주택, 양돈장의 집합물 양도담보

정부의 그린홈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되면 많은 은행들이 태양열 주택시설에 대해 대출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은행은 그의 자금으로 설치한 태양광 패널, 열교환기, 열전달장치 등 태양열 주택시설을 일단 담보로 취득하겠지만, 곳곳에 산재한 태양열 주택시설에 대한 담보관리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고가의 시설 중심으로 경비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기든가, 사실상 담보관리를 포기하는 등 양자택일의 기로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축산업자가 양돈장의 돼지 전부를 流動집합물 양도담보¹⁵⁾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를 위해 축산업자는 그의 소유인 양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3,000두의 소유권을 양도하되 이를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항시 3,000두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축산업자는 채권자의 허락 없이 돼지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돈장도 그에게 임대하였다. 양수인이 돼지 2,000두를 처분하고 외부에서 2,000두를 새로 반입하여 키우던 중 채권자가 양돈장 내에

14) 물론 양도담보 등 담보권설정계약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담보목적물에 유효한 명인방법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담보권자의 우선순위 주장은 배척을 받기 쉽다.

15) 본래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에 대하여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양돈장 내의 뺨장어, 특정 창고 안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은 양도담보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별 동산에 대하여 수시로 반입·반출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설정자가 반입·반출한 개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권의 추급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여 거래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다만, 반입된 동산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특정 장소내의 유동집합물 숫자가 양도담보계약 당시의 숫자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양도담보권이 미치는 범위를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있는 돼지 3,000두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주장하고 인도를 청구하였다. 채권자의 주장은 정당한가?

〈케이스 3〉 부도로 문 닫은 공장의 有人경비 문제

공장주가 부도가 나자 채권은행은 종업원들이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고가의 기계설비를 무단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에 자물쇠를 채우고 경비 용역회사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했다. 그 사이에 공장 임대차 기간이 끝났고 채권은행은 1년여 만에 기계를 처분하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자 공장건물의 임대인이 채권은행이 임대차 종료 후에 공장을 무단 점유했다면서 채권회수액보다 많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해 왔다.

이러한 경우 채권은행은 임대료를 물어가면서까지 공장에 유인경비를 세울 수 없으므로 기업의 회생 여부, 영업양도 내지 M&A 가능성과 상관없이 핵심자산인 기계설비를 처분하려 들 것이다. 아니면 공장을 빌려 쓰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기계류를 담보로 취득하지 않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차임 상당액을 미리 받아놓으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산업단지의 공장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우려하여 채권은행이 공장 기계설비를 담보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기업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정은 채권은행이 공장에 유인경비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비슷하다. 채권은행이 공장에서 일어난 토양 오염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점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민법 제758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경비를 파견하지 않고도 담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3. 새로운 해결방안

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자적으로 등기·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一物一權主義 법제를 채용한 나라는 물론 비점유형 담보(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담보목적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등기부(electronic

registry)를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열람하게 하고 있다. 일찍이 동산담보 제도를 법제화하였던 캐나다의 일부 주¹⁶⁾와 미국에서는 각 지역의 등기소 컴퓨터 시스템에 동산담보를 등록(filing)하여야 하며, 우리보다 먼저 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일본에서도 전자등기제를 채택하였다.¹⁷⁾ 가장 최근에 동산담보 제도를 개혁한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전자등기를 하게 되어 있다.¹⁸⁾ 私法통일 국제기구(Unidroit)의 주도로 2001년에 협약을 체결한 케이프타운 협약(Cape Tow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에서는 국제적으로 항공기, 철도차량 등의 이동장비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항공기 동체와 엔진, 철도차량, 인공위성에 대하여 전자등록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¹⁹⁾ 항공기의 경우 이미 2006년에 등록기관(Registrar)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⁰⁾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2008년의 담보부거래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에서도 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존재를 알려주는 전자적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²¹⁾ 모범 등록규정(model registry regulation)을 준비하고 있다.

16)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의 여러 주에서는 Personal Property Security Act에 따라 1974년부터 동산담보등기를 위한 ACOL (Atlantic Canada On Line)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박원일, "A Paradigm Shift in a Modern Law on Secured Transactions", 국제법무연구 제7호,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3.2, 80면.

17) 일본에서는 일찍이 채권양도등기를 법제화할 때 도쿄의 법무성 민사국 채권등기과에서만 취급하였으나,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편리성과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안전성이 부각되면서 이용이 급증하자 'e-Japan' 전략의 일환으로 온라인 신청방식을 도입하였다. 더욱이 기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동산을 추가한 개정법률이 2005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자등기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18) 동산담보등기규정(RUG)에 따라 경제부의 감독을 받는 등기소<www.rug.gob.mx>에서 전자방식으로 처리한다. John E. Rogers, "Mexico's Unified Secured Transactions Registry Offers New Opportunities for Secured Lending," Strasburger & Price, LLP, February 14, 2011.

19) 예컨대 철도차량의 경우 2007년에 룩셈부르크 의정서(Protocol to the Cape Tow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Railway Rolling Stock)를 체결하고, Unidroit 사무국은 2011년 2월 전자등록부(International Rail Registry)를 구축·운영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20) 미국의 경우 오클라호마 연방항공관리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에 리스, 저당권 설정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Francis X. Nolan III, "What Does an STB Filing Tell You?", *Equipment Finance Newsletter*, Vedder Price Equipment Finance Group, September 2010, p.8.

21) 석광현,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법무부, 2010.4. 273면;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GA Res. 63/121, UN GAOR, 63rd Sess., 17 December 2008.

특히 동산담보에 전자등기·등록을 이용하는 것은 컴퓨터의 고속의 대량 정보처리 기능을 바탕으로 수많은 담보목적물을 식별하고 특정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와 그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존재 여부를 간단히 조회·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나아가 목적물의 수익·처분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망과 결합하면 언제 어디서나 동산 등록정보를 열람·조회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우리나라의 동산·채권담보법도 담보등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제7조), 특히 새 법률에서 주목을 요하는 조항²³⁾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①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의 조항, 즉 제17조제1항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설됨에 따라 동 단서의 규정을 잘 활용한다면 종래 문제가 되었던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여러 케이스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⁴⁾

22) 자산유동화법에서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양도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때 특히 유동화자산의 명세는 전자기록(CD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동법 제6조 제3항), 이것은 그대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DART) 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 있다.

23) 법무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새 법률의 해설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현황조사의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담보권자가 직접 현황조사를 하거나 관리를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담보권설정자에게 정기적으로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황조사로 담보권설정자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나,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101.12, 63면.

24)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가 아무리 원해도 담보권자로서 이용이 간편하고 채권회수에 유리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그 이용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담보권자로서는 해당 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고 쉽게 처분할 수 있는 등 담보권실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동산에 담보권을 취득할 때 이 밖에도 양도담보, 리스, 소유권유보부 매매,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공장이 도산위기에 처하면 종업원들이 고가의 동산부터 반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가장 경계하게 된다.

<그림> AIDC 태그를 통해 기업동산을 관리하는 체계도



출처: <<http://www.edipax.com>>

여기서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electronically identifiable tag)’²⁵⁾란 무선주파수 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이 가능한 전자 태그 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자동식별 데이터수집(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AIDC)²⁶⁾ 장치를 말한다. RFID 관련기술은 유비쿼터스의 핵심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종래 문제가 되었던 기술적인 난관도 하나하나 극복해 가고 있다.²⁷⁾

25) 법조문은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에 입각하여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한 것이다.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에는 바코드, QR(quick response, 2차원 바코드), OMR(광학 마크인식), OCR(광학문자인식), MICR(자기잉크문자인식), 자기띠(magnetic strip), RFID, 스마트카드(IC card), 생체인식(biometrics)을 모두 포함하며, 아직 선보이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도 예견할 수 있다.

26) AIDC는 현재 RFID, QR 등을 가리키나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하게 될 전자적인 자동인식 데이터수집 수단을 포함하는 망라적(catch-all)인 개념이다. 고가의 동산에 대하여는 RFID, 심지어는 GPS가 부착된 능동형(active) RFID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이 문제될 경우에는 QR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7) RFID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던 것은 RFID의 성능 및 내구성, 기존 시스템과의 연결 작동 여부, 주파수 대역의 확보, 여러 기업간에 RFID를 제휴하는 경우의 시스템 오류, 그에 따른 거버넌스(自律規制 방식)와 코스트 분담, RFID의 데이터 형식 및 운용(operation)의 공통화에 관한 것들이다. 또한 무권한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본인식별장치를 갖춰야 하고 위·변조, 복제, 무단 철거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RFID·리더의 표준화, 통신·데이

현재의 전자기술로는 AIDC 장치를 목적물에 부착하거나 내장(embedded)함으로써 당해 물건을 특정하고 그의 사양, 이용상태, 소재지 등의 데이터를 AIDC에 수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담보권자로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담보물이 망실되지 않았는지, 또한 담보가치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하는 담보관리에 있어서나 담보물을 환가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 동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III. 새 법률 하에서의 동산 담보관리 효율화 방안

1. 동산담보의 관리약정의 체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이 망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수시로 담보목적물의 현황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앞의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서 대출금으로 구입한 기계설비 등의 담보목적물이 담보가치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담보가치의 손상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도담보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담보권자로서 최종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²⁸⁾

이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와 약정을 맺고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터 프로토콜의 표준화, 업계이용의 표준화 등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 오퍼레이션의 변경, 에러 발생 시의 대처방법, 이용자 교육, RFID가 여러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前과 後의 오퍼레이션의 연결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솔루션이 요청된다. 박원일, 앞의 논문, 235면.

28) 공장 기계가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제3자가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으로 공장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당해 기계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저당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08.10.9. 선고 2007가합24414 판결).

다. 물론 목적물에 표지를 내장시키는 것도 허용된다. 여기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한 것은²⁹⁾ 전자식별표지, 즉 AIDC의 부착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마련이므로 이를 선택사항(option)으로 하여 AIDC 종류의 선정, 구매 및 부착 비용의 부담, AIDC 기능의 가동 또는 정지, 부착기간, 당사자의 협조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AIDC를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담보권자로서 담보목적물의 현황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담보권설정자와 약정을 맺고 ③ 전자식별표지는 기술적으로 오류가 무시할 정도여야 하며 ④ 담보권설정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우지 않거나 ⑤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⑥ 그의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⑦ 담보권자로서 전자식별표지를 통해 부가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여기서 ③, ④, ⑥의 사유가 있으면 담보권설정자는 약정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담보권설정자가 해당 목적물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의 현황조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무한정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채권은행이 채무자와 약정을 맺고 담보목적물에 RFID를 부착(내장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채무자가 이미 자산관리, 유통·물류관리를 위하여 RFID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은행의 요청에 따라 담보관련 사항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을 것이다.

2. RFID를 이용한 동산담보관리의 전제조건

법조문에서는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라 하고 있는데 앞서 소개한 케이스의 문제 해결을 위해 RFID를 사용할 수 있는가? 담보목적물 현황조사는 1차적인 목적일 뿐 부차적으로는 자산·설비관리(asset/facility management: A/FM)라는 RFID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케이스 1> 공장에 설치한 기계·기구³⁰⁾의 경우 분리 가능한 부품 단위

29) 법무부에서의 이 법안 작성 과정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관련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중복투자 방지, 법적 안정성, IT산업의 육성 등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다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별로 RFID를 붙여 놓는다면 담보목적물의 현황조사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³¹⁾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라인을 옮겨 설치하고 도색을 새로 하더라도 다른 기계라고 우길 수 없으며, 핵심 부품을 공장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장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즉각 적발할 수 있다. 이 때 RFID 태그를 훼손하는 것은 담보물 훼손과 똑같이 취급된다.

<케이스 2> 태양열 주택의 경우에는 채권은행의 입장에서 수천, 수만 호의 대상 주택에 설치된 수만, 수십만 점의 담보목적물을 관리하기란 인력·비용·시간 면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양돈장의 경우에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生物에 부착하는 RFID 태그³²⁾가 아니면 원격지에서 목적물의 생존, 폐사, 이동, 처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앞서 소개한 <케이스 2>의 두 번째 사례는 실제 거래가 몇 단계 더 이루어지는 등 이보다 훨씬 복잡하였지만, 대법원이 심리 판단했던 사안이다. 원심은 담보설정자로부터 [순차로] 양도된 돼지들이 각 양도시마다 그 수량의 증감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양도담보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여 주목을 받았다.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돼지 중 피고가 애초에 양수한 농장 내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가 있다면 그 돼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이다.³³⁾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권자로서는 유동집합물의 외관에 큰 변동이 없더라도, 양도담보설정자 또는 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자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의 제

3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에 대하여는 동산·채권담보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만일 공장주가 공장저당권의 추급력과 공동담보, 일괄경매 등 공장저당권의 이점을 누리고자 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공장저당권에 목록추가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31) 채권은행의 실무자로서는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담보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수시로 대조해볼 수 있으므로 도난·유실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감가(wear and tear)를 제외한 담보물의 멸실·훼손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동안 금융기관들이 동산의 담보취득을 주저했던 이유는 채무자가 부도가 난다든가 담보물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졌을 때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담보로 잡은 기계·기구가 리스물건 또는 양도담보목적물과 혼동되는 경우 역시 비밀비재하였다.

32)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돼지, 뱀장어 같은 생물에도 RFID 태그를 붙일 수 있고, 다종다양한 담보물건에 적합한 RFID 태그를 구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공장에 적용하려면 비용·시간 측면에서 정부나 중소기업단체, 채권은행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3)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한을 승인하지 아니한 제3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반입한 동산에 대하여는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³⁴⁾ 그러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의 담보권이 미치는 집합물의 구성물에 대하여, 그것이 창고 안의 재고자산이든지, 양돈장의 돼지든지³⁵⁾ RFID 같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별도의 자금으로 반입하여 기존 집합물과는 구분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양수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케이스 3> 공장의 유인 경비 문제 역시 채권은행이 RFID 태그를 곳곳에 붙여 놓음으로써 공장을 현실의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지배가 가능하다. 누군가 공장을 침범하여 담보목적물을 반출하려 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각 탐지하고 경비인력을 출동시켜 그러한 행위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RFID가 동산담보관리에 아주 적합하더라도 채권은행이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담보목적물에 RFID 태그를 부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기술적 신뢰성(technological reliability),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법적 안정성(legal stability)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³⁶⁾

첫째, RFID가 담보목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RFID 시스템³⁷⁾이 비접촉식 무선주파수 인식 기술이기 때문에 제기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RFID가 인식을 못하거나 인식의 오류가 발생한다

34) 제3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동산이 이러저러한 연유로 외관상 집합물 안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양도담보설정자 소유의 동산과 제3자 소유의 동산이 같은 장소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의 집합물로 존재하여 그 전체가 양도담보권자의 처분권 하에 놓이게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양도담보계약에서 지정된 장소에 존재하는 현재의 집합물에 양도담보권이 미치는 근거는 계약당사자가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제3자가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외부에서 반입한 개별동산에까지 양도담보권이 미친다고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이는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이다. 탁경국,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법률신문(제3333호), 2005.1.24.

35) 냉동수산물, 양식수산물의 담보대출에도 RFID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대 외, “수산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보고서”, 국토해양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10.12.31, 69~71면 참조.

36) 여기서 외국의 입법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아직 동산담보관리에 RFID를 사용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IT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동산담보통기를 법제화할 때 RFID를 도입하지 않았다. RFID 기술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미국의 경우 카운티마다 있는 등기소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UCLA 로스쿨 린 로푸키 교수의 말).

37) RFID 시스템은 개별 동산에 RFID를 부착하는 경우 500Mhz, 900Mhz, 2.45Ghz 대역의 단말기와 리더기, 태그, 프린터 등으로 구성되며, 동산담보관리 및 그 운용방법을 제공한다. 2차원 바코드 QR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말기와 리더기, 프린터 등으로 AIDC 시스템이 구성된다.

면 고가의 담보목적물을 관리하는 데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로 RFID 시스템을 적용한 고속도로 무인 톨게이트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오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조달청 및 지자체에서 수 년 전부터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재물을 관리할 때 RFID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³⁸⁾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거의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달청과 각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국·공유 재물에 대하여 RFID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정지상태에서 RFID 시스템을 운용하기 때문에 인식률이 높고 오류가 있더라도 즉시 시정이 가능하다.

둘째,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리더기를 사용하여 담보물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담보권자나 담보권설정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이거나, 그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편익(benefit)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에도 대기업이나 물류기업은 상당수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RFI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서는 RFID 시스템을 이용할 때 어떠한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cost-benefit analysis) 한다.

RFID를 통해 수집한 담보목적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거의 그대로 전자등기부에 전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등기(자산유동화의 경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담보목적물이 제한된 구역 내에 있는지, 외부에 유출되는지 여부를 고정형 게이트 리더기를 통해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고, 이동형 리더기를 가지고는 특정 동산 또는 그 부품의 망실 여부를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다. 송신이 가능한 능동형(active) RFID인 경우에는 목적물이 이동하였더라도 새로운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담보목적물의 현재상태 및 과거이력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재고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보권자가 요청하는 여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동산의 현재상태 및 과거이력을 검토한 후 동산관리의 상태를 1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거나(scoring), A(우수), B(보통), C(불량), D(평가불가)의 등급을 매겨(rating) 담보권 실행가격 책정 등의 담보물 심사(evaluation)에 활용한다. 위의 데

38) 조달청에서는 2009년 이래 정부소유의 물품 관리에 RFID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개별 물품의 구매, 보관, 처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RFID에 기초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국경제신문, “2010년부터 전 국가기관 보유 물품 RFID로 관리된다”, 2009.12.4.

이터베이스를 기초로 데이터를 일정 기준으로 분류·조합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거래소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게시하고, 당해 동산을 처분·교환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셋째, RFID를 적용한 동산담보관리 및 담보권자의 권리주장이 법적 안전성 및 기존 법질서에 비추어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 동안 매출채권과 동산들을 자산유동화 대상자산(underlying assets)으로 하였던 것은 사실상 이들 자산을 담보로 활용한 셈이었다. 그럼에도 동산·채권담보법안의 성안 과정에서 담보목적물에 RFID와 같은 AIDC 장치를 도입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⁴⁰⁾ 종래의 선의취득 법리를 흔들 수 있다는 민법학자들과 사법부의 주장이 거셌기 때문이다.

예컨대 RFID가 부착되어 있는 줄 모르고 어느 공장에서 무단 반출된 기계를 구입한 선의취득자가 있다고 하자. 종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동산 점유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고 동산을 매수하였다면 그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는 한 당연히 선의취득이 인정된다.⁴¹⁾ 그러나 그 기계의 RFID 기능이 살아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하자 있는 물건이 되고 선의취득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⁴²⁾ 선의취득의 법리가 매우 복잡해지는 것이다.⁴³⁾

39) 이에 관하여는 “AIDC 기술을 이용한 동산관리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이라는 BM특허(제 10-1022762호)에서 여러 가지 정교한 사업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40) 법무부 2009. 7. 17 공청회 자료.

41)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다.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42) 기계류를 거래하는 장터에서 기계를 평온·공연하게 인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기계를 선의취득하게 된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93671 판결)에 의하면, 양수인이 기계를 제3자로부터 평온·공연하게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양수인이 그 기계를 인도받을 당시 소유권 유보부 할부매매로서 할부금의 일부가 미지급 상태인 것을 알았다면, 양수인은 본건 기계와 같은 물건의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서 소유권유보의 약정이 포함된 계약 거래에 있어서 기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탐문하지 아니한 채로 이를 양도받은 것이므로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RFID 태그가 붙어 있는 기계류에 그에 관한 명인방법이 갖춰져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RFID 리더기가 없더라도 그 기계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이고 다른 권리자는 없는지 RFID 태그에 입력된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43)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표지가 담보권자 모르게 위조·

일단 RFID를 이용하는 측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확실하게 눈에 띄는 명인방법을 갖추도록 하고, 만의 하나 선의취득 법리에 따라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의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과 같은 보험상품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⁴⁴⁾ 나아가 새 법에 의하여 첨단 정보기술이 널리 이용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물건을 취급하는 사업자나 동산담보권을 취득하는 금융회사라면 당연히 RFID 부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업무상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3. RFID를 이용한 구체적인 동산담보관리 방법

동산·채권담보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위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한 담보권자인 은행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담보로 잡은 모든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담보등기를 하기 전에 담보권설정자와 약정을 맺고 RFID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담보권설정자에게 적합한 RFID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 ②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③ 담보권설정자는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가, 아니면 위탁관리(外注, outsourcing)하는가.
- ④ 담보권자인 채권은행에서 담보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연수⁴⁵⁾가 필요한가.

번조, 무단으로 개조 또는 제거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 결과 담보권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고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 원인을 야기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그로 인해 담보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은 물론 형법 제347조의2 등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44) 필자가 2007년 UCLA 로스쿨에 방문교수로 가 있는 동안 미국 담보법제의 권위자인 로푸키(Lynn M. LoPucki) 교수와 이 문제를 상의한 바 있다. 로푸키 교수는 RFID태그에 기록된 데이터를 그대로 전자적으로 등기부에 옮길 수 있는 편리한 점은 있으나 'Inventory List' 이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무슨 돈이 되는 이점(commercial benefits)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였다. 그리고 담보물에 관한 사기를 방지하거나 점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만으로 과연 태그를 위반조하거나 제거할 위험성을 능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재고자산 등에 RFID를 부착 관리하고 이를 그대로 은행담보로 활용한다면 채권은행들이 안심하고 동산담보부 대출을 늘리게 될 터이므로 기업활동이 훨씬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전자식별표지의 위·변조나 무단 제거에 대한 대책만 서 있다면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임에 틀림없다. 박현일, 비교사법 앞의 논문, 247면.

45) 대출 전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동산담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은행 내에 동산담보의

- ⑤ RFID 관련 사업모델⁴⁶⁾을 따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 ⑥ 담보관리용 RFID에 입력할 등기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⑦ 은행과 담보권설정자, 등기소의 시스템이 온라인(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 ⑧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 ⑨ 다른 사업부문과 관련이 있거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만일 담보권설정자가 이미 RFID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①~③은 검토할 필요가 없고, 장·단기로 나누어 ④와 ⑤, ⑥~⑧을 검토하면 될 것이다.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RFID 시스템의 도입은 선택적(optional)이고, 장기적으로는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산 및 재고관리에 RFID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담보권자인 채권은행은 담보권설정자로 하여금 담보권을 설정한 동산에 대하여 동산·채권담보법에 규정된 등기사항⁴⁷⁾을 RFID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정보가 등기

평가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거나, 공장의 기계설비나 고가의 장비에 대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전문 평가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46) 현재에도 RFID를 이용한 자산·설비관리(A/FM)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RFID 시스템에 축적된 고부가가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특정 동산의 효과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의뢰인이 요청하는 수리, 부품의 교환대체, 개량, 국내외 원매자 물색, 가격 협상, 운용상태 보장(operation guarantee) 등의 각종 자문(consulting)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7) 동산·채권담보법 제47조제2항에 규정된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
 - 나.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1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소의 동산등기부에 등재하도록 한다.⁴⁸⁾ 담보목적물의 현황조사를 위해서는 담보목적물의 데이터베이스와 담보등기 내역을 서로 대조하여 담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므로 본고에서 설명하는 RFID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담보물 현황과 동산담보등기 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또한 담보물의 데이터베이스에 부가가치 높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담보물의 처분·교환·매매알선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본의 사례연구

일본에서는 수년 전에 경제산업성(경제산업정책국 산업자금과)이 금융기관 간부, 기업인, 학자 등 18명의 위원과 법무성, 금융청, 일본상공회의소의 관계자를 옵서버로 하는 ABL⁴⁹⁾연구회를 설치하였다. 2005년 9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6차에 걸쳐 2006년 3월까지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는 노무라종합연구소(금융건설부)가 데이코쿠(帝國)데이터뱅크의 지원을 받아 ABL연구회 보고서⁵⁰⁾로 발표되었으며, [ABL 가이드라인]은 2008년 3월에 채택되었다. 본고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BL연구회는 그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실제 검토되고 있는 ABL의 대출모델 중에서 선진적이고 정책적으로 조사연구의 가치가 높으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6.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7.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8.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9. 담보권의 존속기간

10. 접수번호

11. 접수연월일

48)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그것이 RFID이든 새로운 AIDC 기술이든 법정 등기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관독·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전자식별표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자등기부에 쉽게 옮길 수 있고, 반대로 전자등기부 기재사항을 전자식별표에 옮겨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자식별표가 제거·훼손되거나 그 기능이 정지되지 않는 한, 전자식별표가 부착된 물건은 특정이 되고 전자등기부에 표시된 물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49)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담보가치가 아닌 수익가치에 기초한 대출(Asset-based Loan)을 말한다. 박현일, "ABL거래의 구조와 법적 측면", 『세계화시대의 기업법』(이기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10.12. 404면.

50)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report/downloadfiles/g60704a01j.pdf>>.

을 시범(model)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을 해봄으로써 기업의 니즈(需要)와 금융기관의 활용 메리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널리 홍보하는 한편 연구회의 입장에서 실무에 입각한 검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중에서 본고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IT을 활용한 ‘재고관리형’ 모델이었다.⁵¹⁾ 2006년 3월 미즈호 은행은 교토 소재 의료복지용구 렌탈회사에 대하여 렌탈용 의료복지용구 일체를 담보로 취득하였다. 자금수요가 없으므로 실증실험만 수행하였으나, 담보대상 기구에 IC태그⁵²⁾를 부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채권은행은 실시간으로 정확한 재고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으며(여신한도의 설정 등 정확성 제고), IC태그에 담보정보를 기입하는 明認기능의 검증이 가능했다. 다만, 담보변경을 방지하는 것과 담보의 명인기능으로서 사회적 인식, 표준화가 필요하고, 실사시간의 단축을 위한 IC태그, 리더, 라이터의 성능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태그에 기입된 이력정보를 이용하여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곤란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무자로서는 자율성(governance)이 향상되고 적절한 재고관리 시스템의 구축, 정보제공을 통한 대주와의 신뢰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IV. 맺음말

2012년 6월 동산·채권담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동산 뿐만 아니라 매출채권,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동산 일변도에서 벗어나 동산 및 채권, 지적재산권으로 담보대상을 확대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이다.⁵³⁾ 동법은 담보등기부를 전자적으로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과 연결된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구축하기로 하였다.⁵⁴⁾

51) ABL研究會, 「ABL研究會 報告書」, 日本 經濟産業省, 2008.3, 16~17面.

52) RFID 태그를 말한다.

53) 2000년대 들어 동구의 체제전환국 뿐만 아니라 덴마크, 프랑스,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유체물, 무체물, 현재, 장래의 것을 막론하고 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Getting Credit", *Doing Business 2008 - Comparing Regulation in 178 Economies*, World Bank & IFC, 2008, p.32.

54)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동산담보등기와 채권담보등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전산정보처리조직

아무리 새로운 담보법제가 자금조달에 유리하더라도 담보권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심할 수 없는 한 널리 활용되기 어렵다. 담보권자가 제도 자체를 신뢰하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실제 이용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첨단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 결과 동산 담보목적물의 현황조사를 위해 첨단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한다면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고가의 동산에 대한 담보 취득에 적극성을 띠고, 중소기업은 보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동산담보관리 시스템에 RFID/USN 기술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첨단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계설비, 재고자산 등 동산의 고유 ID 확인, 이력관리, 사용 및 운용 현황, 이동, 망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RFID를 통해 기계 고유의 ID 확인, 이력관리, 동일성 점검이 가능하고,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의 센싱 기능과 위치파악 기능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서 사용 중인 설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채권은행에 현황보고를 할 수 있다.

동산담보관리 모델은 현재 기업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자산 및 설비관리(A/FM)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동안 자산유동화 대상자산(underlying assets)으로 자금조달에 이용하였던 동산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담보등기를 한 다음 기업금융 및 담보관리를 자산 및 설비관리와 연계시킬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기업경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로, 중소기업 보유 동산의 담보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종전에는 동산의 수명주기(life cycle)에 따른 급속한 가치하락과 식별의 곤란, 이동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담보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담보권 실행에 의한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그 만큼 담보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특히 채권은행들은 담보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급상승하게 되므로 동산 담보취득을 기피하고 신용대출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채권회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채권은행의 입장에서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담보목적물을 특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산에 대해 제 가치를 인정받고 그 만큼 은행대출도 크

(computer & communication system)에 의하여 처리하며, 등기신청 및 접수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8호, 제40조, 제42조, 제45조, 제47호).

게 늘어날 전망이다. 만일 담보관리 서비스⁵⁵⁾를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한다면 채권 은행으로서 담보관리 인력을 특별히 채용할 필요가 없다.

셋째로,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는 담보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을 위한 동산담보관리 서비스는 이용이 늘어날 경우 현재의 전문 경비용역업체와 같은 서비스 인력에 대한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u-동산담보관리’라는 새로운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이 출현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⁵⁶⁾

끝으로 동산·채권담보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담보관리 서비스 및 정보기술 인력의 수출까지도 모색할 수 있다. 이미 동산담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여러 체제전환국(transition economies)에서도 우리나라 못지않은 경제적인 편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55) 담보목적물에 전자식별표를 붙여서 관리하는 것은 담보권자가 직접 하지 않고 담보관리인(collateral agent)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담보관리인의 임무는 담보권설정자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담보권자를 위하여 담보등기를 하고 그 내용을 전자식별표에 저장하여 담보목적물에 부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담보관리인은 담보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상으로 보고한다. 만일 담보목적물의 현황과 등기사항이 다르거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담보관리인의 활동은 첨단장비를 갖추어 전문화할 수 있을 것이다.

56) 이러한 서비스가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게 되면 전문 용역업체의 등장과 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산담보법제의 선진화가 요청되는 체제전환국까지 해외시장으로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제와 함께 신기술 서비스, 운영요원의 해외수출도 유망해 보인다. 박현일,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금융법연구 1권 2호, 2004.12, 185면.

참고문헌

- 김재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월간 법조, 법조협회, 2009.11.
- 김효석, 「일본의 동산 및 채권양도 특례법의 개요 - 신설된 동산양도등기제도를 중심으로」, 법무사저널, 2007.1-2월호.
- 박환일,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금융법연구 1권 2호, 2004.12.
- _____, 「기업동산의 담보활용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비교사법 14권 2호, 2007.6.
- _____, 「A Paradigm Shift in a Modern Law on Secured Transactions」, 국제법 무연구 제7호,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3.2.
- 석광현,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법무부, 2010.4.
- 정 대 외, 「수산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보고서」, 국토해양부·한국해양과학 기술진흥원, 2010.12.31.
- 최병선, "Expected Legislation Regarding Security o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Shin & Kim Newsletter*, Winter 2010.
<http://www.shinkim.com/newsletter/200912/eng_201.html>
- 탁경국,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법률신문(제3333호), 2005.1.24.
- 대법원 특수등기연구반,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 법원 행정처, 2007.11.
-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 2009.7.17.
- _____,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0.12.
- Francis X. Nolan III, "What Does an STB Filing Tell You?", *Equipment Finance Newsletter*, Equipment Finance Group, September 2010.
- World Bank Group, "Getting Credit", *Doing Business 2008 - Comparing Regulation in 178 Economies*, World Bank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08.
- ABL研究會, 「ABL研究會 報告書」, 日本 經濟産業省, 2008.3.
<<http://www.meti.go.jp/report/downloadfiles/g60704a01j.pdf>>.

How to Efficiently Manage Movable Properties under the New Collateral Regime in Korea

Park, Whon-II*

A new collateral law, the “Act on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ies, Receivables, etc.” (the “Act”), came into force in June 2012 in Korea. During the past few years, the government worked out the bill that would allow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or venture businesses to use movable properties, account receivabl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collateral. After a two-year preparation period necessary to establish nationwid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s, the Act is expected to broaden the range of collateral assets.

The new Act would be useful when creditors regard it as convenient and reliable to create security interests. What is necessary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necessity and actual practices is the adoption of state-of-the-art information technology. In this regard, employing a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seems to be a global trend not only in civil law countries based on a one-good-one-right principle but also other jurisdictions with 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s. There are several examples of a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instance, Japan, which ushered in movable property collateral ahead of Korea, has already implemented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n particular, Korea’s movable property registry is to be conducted electronically, taking advantage of computer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with necessary functions of high-speed bulk processing and access to broadband Internet. Such registry can identify and specify an

*. Professor of law at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individual good as collateral. It can help users to confirm the identity or similarity, specify the goods, and check information regarding encumbrances for the goods.

Then, what should a creditor bank do once the Act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1) of the Act, a creditor bank may feel it necessary to enter into an agreement of collateral administration with RFID devices prior to taking security interests in machinery, equipment and inventories.

This paper has suggested that RFID technologies be used in the administration of movable properties. RFID systems are used to recognize the identity of machinery, equipment and inventories, to manage traceable history of collateral, and to control the operations and movement of collateral on an integrated basis.

Consequently, productive effects of efficient collateral administration are expected as follows:

First, all types of movable properties will be regarded as useful security. So far, the value of movable property decreases sharply along with its life cycle. Its high mobility and difficulty of identification make collateral administration almost impossible.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s could not ensure sufficient recovery of claims. All these problems can be settled by the IT-based solutions as mentioned above.

Second, the secure control and monitoring of collateral will enhance its value, and more loanable funds are available to SME borrowers. Creditor banks had better take advantage of outsourcing specialized services of collateral administration.

Third, accumulated data on collateral will give rise to new value-added services like prevention of theft, real-time reconciliation of the status quo collateral with the original registration, arrangements for sale or exchange of second-hand machinery,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collateral assets, and so on. It will be followed by creation of new jobs

and high-technology movable property management services.

Finally,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ew collateral regime on movables and receivables is expected to promote export of Korean legal systems as well as hardware and software for collateral administration and IT labor forces to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adopted movable properties as collateral. Most of all, being informed of the benefits of new collateral administration methods, such transition economies as China, Vietnam, Mongolia, Kazakhstan, etc. will be interested in the Korean legal regime and administration of collateral.

주제어: 동산, 담보등기, 양도담보, 전자태그(RFID 태그), 선의취득
movable property, collateral registration, fiduciary transfer of
title, RFID, innocent acquisition